의안번호	2207198
의 뢰 인	강선우 의원
회 답 일	2025.01.17.
추계번호	25C0006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조의2 (국가 등의 책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・연구・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9조 (출연 또는 보조)	(제3항)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4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・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[1]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안 제19조(출연 또는 보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기존 출연금 및 보조금 규정 외에 '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'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지원 기준·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지출규모에 대한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

○ 현행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·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'출연금'(법 제19조제1항),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에 대한

1)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, 관련 사무 및 인력, 예산 등은 이관될 수 있으나,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업무량 및 인력의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계상하지 않음

'보조'(법 제19조제2항), '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를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정부 보조'에 대하여 규정(법 제19조제3항)

- 교육부는 '국립대병원 지원 사업'에 총 117,057백만원(2025년 예산 기준)을 편성

[표 1]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(교육부) 예산 산출세부내역

예 산	산출내역
사업출연금(350-02) 113,117,000천원	가. 시설확충 및 보수 (74,566,000천원) 나. 장비구입 및 교체 (15,503,000천원) 다. 정책사업 (23,048,000천원)[2]
민간경상보조(320-01) 3,940,000천원	정책사업 (3,940,000천원)[3]

자료: 교육부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

○ 개정안에 따라 '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'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경우 '기존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우선 충당되던 운영비 등'과 '대학병원의 사업'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이 실시될 수 있어 정부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이 실시될 구체적 내역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[4]

- 개정안은 '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'과 '국립대학 병원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'을 제안이유로 서술하고 있어 관련 사업 지원 등[5]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
- 참고로 '24년 8월 발표된 '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(보건복지부)'에서도 의료개혁 분야별 투자계획(안) 중 권역 책임의료기관(국립대병원 등)을 수도권 대형병원과 동일 수준의 선도적 지역병원으로 양성하는데 1,836억원('25년), 국립대병원 연구

2) 임상교육훈련센터건립비
3)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
4) 이외에 안 제1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등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선언적 성격의 조항으로 구체적 재정소요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5) 보건복지부는 '필수의료 혁신전략(2023.10.)'에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·의원과 상생·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'교수 정원 대폭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력확보', '한국형 ARPA-H 필수의료 장기투자, 진료-연구 병행 지원, 산학협력단 설치 등 R&D 투자', '중증·응급 보상 강화,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 지속 확대 등 공공정책수가', '노후 의료 시설·장비 개선 지원 확대,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등 인프라 첨단화'와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'국립대병원 중심 인력·병상 즉각 대응체계 확립 및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·협력 강화로 대응 기반 확충' 등을 발표한 바 있음

인프라 및 특화 연구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128억원('25년), 국립대병원 시설·장비를 위한 829억원('25년, 교육부)이 계획된 바 있음[6)]

❑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6) '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'(보건복지부, 2024.08.30.) 참조